

「2026년 농림축산식품(산림소득분야) 지원사업」 추가 모집 공고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4조 및 「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8조, 제9조, 제17조에 따라 규정에 의거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6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.

2026. 4.

파 주 시 장

1. 사업 개요

- 가. 사업명 : 2026년 농림축산식품(산림소득분야) 지원사업
- 나. 사업기간 : 2026. 4. ~ 12.
- 다. 지원한도 : 7,302천원(자부담, 용자 제외)
- 라. 사업내용

| 사업명 | 지원내용 | 지원비율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산림작물생산단지 | 산림버섯 자목·톱밥배지 구입, 관수·관정시설, 냉해 예방시설, 작업로, 보호울타리, 감시시설 등 *상세내용은 사업대상별 지원기준(붙임2) 확인 | 국비20, 지방비30 용자30, 자부담20 |

2. 접수 개요

- 가. 신청기간 : 2026. 4. 13.(월) ~ 2026. 4. 27.(월) 18:00
- 나. 접수방법 : 방문 및 등기접수
 - 방문 접수 시 점심시간(12:00~13:00)에는 접수가 불가함.
 - 등기접수는 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.
- 다. 접수처 : 파주시 산림정원과(우10894, 파주시 금바위로 10)

라. 제출서류

- (공통) 사업신청서식^[붙임1], 농업(임업)경영체 확인서, 견적서
- (추가서류) 임대차계약서, 산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(임산물 재배경력 1년 미만)

3. 지원자격 및 요건

-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[별표2] “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” 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, 농업 경영체(임업경영체 포함), 임업후계자, 독립가,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또는 생산자단체
-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, 농업경영체(임업경영체 포함), 생산자단체

| 구 분 | | 지 원 자 격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임업인 등 * 개인에 한함 | 임업인 |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임업인 |
| | 농업경영체 (임업경영체 포함) |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*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|
| | 임업후계자 |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|
| | 독립가 | 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에 의한 독립가 |
| | 신지식농업인 (임업분야) | 「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」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(임업분야) |
| 생산자단체 | |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 등) |

* 확인방법 : 등기부등본, 품목 출하실적, 교육이수증, 근로계약서, 4대보험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

○ 지원요건

-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이수 하여야 보조금 교부됨
- * 산림소득분야 협·단체, 임업진흥원, 산림조합, 산림교육원, 대학교 등 산림·임업분야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(고등학교·대학교 산림·임업분야 전공자 및 산림·임업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,

임업후계자 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외) 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

- * 온라인 강의는 이수 시간의 50%만 인정되며, 산림소득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교육이수 가능(사업 시행 당년도 보조금 교부 전 3월 말까지 이수 조건이며, 동 기간까지 교육 미 이수자는 지원 제외)
-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함
- * 단, 임업인 등(생산자단체 제외)이 '등기 비대상 시설물'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

○ 우선지원

-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
- 농업재해보험(농작물 및 농업인)에 가입한 생산자 및 단체(보험가입기간 미도래 시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)
- 전년도 생산조사 기준 생산량이 10%이상 증가한 품목에 대하여 가공·유통사업 우선 지원 가능
- 저온, 가뭄·폭염 등 자연재해 예방시설 : 표고재배사 냉·난방시설, 관수·관정 시설, 비가림시설, 냉해예방시설(방상팬, 미세살수장치 등), 지주대, 지지대, 받침대 등
- 「임업진흥법 시행령」 제17조의2의 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관리임산물(산양삼) 채종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 또는 단체
- (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)자조금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,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우선지원
- 'K-FOREST FOOD' 브랜드 지정서를 발급받은 생산자 및 단체

○ 제외대상자(지원제한기간 : 5년 이내)

- (5년)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보조금 교부취소 등 1회 이상 받은 자
- (3년)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 교부 취소 등 2회 이상 받은 자
- (2년)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하여 교부

취소 받거나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반환명령 3회 이상 받은 자

-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, 사업변경, 농업분야 중복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산림소득분야사업을 포기하는 경우(다만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) 소액사업은 2년간, 공모사업은 3년간

* 사업 시행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지원 제한 면제

* 제한기간은 사업 포기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로 산정

- (의무자조금 도입 품목의 경우) 자조금단체에서 고지한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은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지원 제한

- 뚝은감 : (사)한국뚝은감협회(02-2080-6380)에 의무거출금 고지 및 납부 여부 확인

- 참고·주의사항

- 임업인에 해당되지 않은 임업후계자의 경우, 지원받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지원제한이 있을 수 있음.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.
- 기타 문의사항은 산림정원과 산림휴양팀(☎031-940-4612)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사업신청서 1부.

2.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 지침(산림청) 1부.